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11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조례명	쪽수
2025-152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5-153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1
2025-15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17
2025-155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23
2025-156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구교육과)	29
2025-157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33
2025-158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37
2025-159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41
2025-160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	49
2025-161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과)	53
2025-162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창사건사업소)	57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5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관 협력 위원회로 구축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9조~제16조)

1) (현행) 군정조정위원회 대행

⇒ (변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적 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2)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3)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 간사, 운영세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20조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 1,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9. 5.~9.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12조)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제17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업무 및 관련 부서의 국장이나 소장·과장·담당관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군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u>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④ (생략)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신 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4. (현행과 같음) 5.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u>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업무 및 관련 부서의 국장이나 소장·과장·담당관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 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군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u><신 설></u>	<u>제15조(간사)</u>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u>제10조(위탁)</u>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u>제16조(운영세칙)</u>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u>제17조(위탁)</u>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참석 수당

나. 관련 조문: 위원회의 운영(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나. 회의 참석수당

1) 연 1회 회의 개최

2) 위원 10명 * 수당 100,000원 = 1,000,000원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5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및 설문 참여 주민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개선함(안 제8조)

1)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우선순위 선정 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의무화

나.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 행정지원을 정함(안 제17조·제22조)

다. 현행 제안자 중심의 포상 범위를 설문 참여자까지 확대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1,5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9. 22.~9.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검토할 수 있다.”를 “검토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연구회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제6조제2호”를 “제6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을 “(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중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연구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연구회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 3.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이 경우 주민의 안전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u>검토할 수 있다.</u> 4.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 5.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6.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u><신 설></u>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 3.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이 경우 주민의 안전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u>검토해야 한다.</u> 4.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 5.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6.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 ① <u>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② <u>연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u> ③ <u>군수는 연구회에 참석한 회원에 대</u>
---	---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지급방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u><신 설></u> 제22조(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공간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① 제6조제4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지급방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공간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참석회원 수당, 주민 제안 및 공모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등 지급
- 나. 관련조문: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안 제17조), 주민참여 예산제 공로자 포상 등(안 제2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나. 2025년 예산 1,500천원
 - 1)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참석수당: 5명*1회*100천원 = 500천원
 - 2)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및 설문 참여 보상금: 1,000천원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5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인 도민체전 기획단을 설치하고 한시정원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를 신설함(안 제29조)

- 1) 분장사무: 도민체전 개최, 경기운영, 시설정비 등
- 2) 존속기한: 2028. 12. 31.

나. 한시정원을 신설함(안 제30조, 별표 5)

- 1) 한시정원 총수: 일반직 8명
 - 가) 5급 중 1명
 - 나) 6급 이하 중 7명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566백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9. 26.~9.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9조·제3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제29조(한시기구) 도민체전 개최 준비 등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도민체전기획단을 두며, 도민체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민체전 개최
2. 경기운영
3. 시설정비 등

제30조(한시정원) 도민체전기획단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u><신 설></u>	<u>제7장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u>
<u><신 설></u>	<u>제29조(한시기구) 도민체전 개최 준비</u> <u>등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u> <u>준속하는 도민체전기획단을 두며,</u> <u>도민체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u> <u>분장한다.</u> <u>1. 도민체전 개최</u> <u>2. 경기운영</u> <u>3. 시설정비 등</u>
<u><신 설></u>	<u>제30조(한시정원) 도민체전기획단에</u> <u>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5와</u> <u>같다.</u>

[별표 5] <신 설>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제30조 관련)

도민체전기획단		
일반직	총계	8
	5급	1
	6급 이하	7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거창군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8명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나. 관련조문: 안 제30조(한시정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566	566	566	1,698

3. 관련 의견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인 도민체전기획단 설치에 따라 한시정원을 신설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5년 인건비 기준)

가. 한시정원: 일반직 8명

나. 연간 인건비 증가 총액: 566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이재훈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5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생략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조의 제목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5조~제7조)

나. 주요비위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등 표창장 제외(안 제5조의2)

다. 공적심사 절차 개선함(안 제9조의2, 제11조)

1)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 및 포상취소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생략
라. 포상의 취소 신설함(안 제11조)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장 제외 대상에게 수여된 경우

2)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거친 후 취소, 부상품 등 환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9. 4.~9.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포상의 원칙) ① 포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같은 공적이나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5조의 제목 “표창장”을 “표창장의 요건”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표창장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의 제목 “감사장”을 “감사장의 요건”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상장”을 “상장의 요건”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해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제5조의2에 따른 표창장 제외 대상에게 수여된 경우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제2조(포상의 원칙) ① 포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같은 공적이나 성적에 대해서는 이종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북돋우고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표창장의 요건)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북돋우고 솔선수범한 경우
<신 설>	제5조의2(표창장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제1호·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 등에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의 요건)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 등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7조(상장의 요건)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제11조(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해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제5조의2에 따른 표창장 제외 대상에게 수여된 경우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5-15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도민연금 운영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5조)
- 라. 정보제공 및 처리, 위임 및 위탁, 준용을 정함(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 9. 30. 제정·시행)
-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 17,640천원 편성계획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9. 10.~9.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연금”이란 다음 각 목을 대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가. 소득 공백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
나. 노후준비(「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2. “지원금”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보의 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관련기관이나 위임·위탁받은 자(이하 “위임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위임자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도민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
2. 제6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조례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발생요인: 도민연금 가입자 1명당 월 1만원의 군비 지원금
- 나. 관련조문: 도민연금 운영(안 제4조), 재정지원(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도민연금 가입대상인 40세~54세 거창군민은 11,487명으로
경남도민 약 78만명의 1.47퍼센트인 147명이 대상 예상
(2024. 12월 기준)
- 2) 2026년 소요예산액 17,640천원: 147명*10,000원*12개월
- 3) 기존 가입자 147명과 매년 신규 가입자 147명을 추가 모집
하는 구조로 연간 예산액 증가: 도 매년 1만명 모집, 10년
차부터 최대 10만명 유지 계획

나. 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군비	17,640	35,280	52,920	70,560	88,200	264,600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중 2.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
등한 자치단체상호간 부담경비)로 예산편성하여 경남도에 지출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최초연도 2026년: 17,640천원(147명*10,000원*12개월)
- 2. 2027년 이후: 기존 가입자와 매년 신규 가입자를 추가 모집
하는 구조로서, 예산 소요액이 증가하여 5년간 264,600천원,
연평균 52,920천원 정도 지출 발생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5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나이를 상향조정하여 관내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나이를 상향함(안 제3조)

(현행) 34세 이하 ⇒ (변경) 45세 이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9. 5.~9.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 등”을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4세”를 “45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애향장려금은 장기근무경력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지원대상 등)</u> ① 애향장려금은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u>34세</u> 이하인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u><신 설></u> ②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범위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3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등)</u> ① 애향장려금은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u>45세</u> 이하인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② 애향장려금은 장기근무경력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할 수 있다. ③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범위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한 사람당 500천원을 한 번만 지급
- 나. 관련조문: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등(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나. 2025년 예산 20,000천원
 - 1) 애향장려금 지급: $40\text{명} \times 1\text{회} \times 500\text{천원} = 20,000\text{천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5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일자리 창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범위를 개선함으로써 그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지역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위해 지원대상 정비함
(안 제5조)

- 1)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청년, 취업 취약계층 삭제
- 2) 근거: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5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6호

나. 용어나 문장 정비, 법령 재기재 삭제함(안 제1조·제2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9. 5.~9.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업·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청년의 취업·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

7.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위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업·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3.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4.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5.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축제 참가,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6.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취업·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 7. 학력·경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3.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4.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5.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축제 참가,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6. 청년의 취업·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 7.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위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8.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9.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지원 10.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8.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9.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지원 10.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u>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하는 사업 <u><삭 제></u>
--	--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5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27. 시행) 제정에 따른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 사업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센터, 전담조직 및 전담창구를 정함(안 제8조~제10조)
- 마.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533,000천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8. 27.~9. 1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창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른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거창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합지원회의 참석할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군 업무 담당자

가.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다.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2.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에 따른 거창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통합지원협의체”라 한다)는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합·운영한다.

②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통합지원센터) ① 군수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 대상과 상담
 2. 통합지원 대상의 지속적인 지역 거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통합지원
 3. 통합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담조직 및 전담창구)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과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1조에 따른 통합돌봄회의 및 통합돌봄센터는 제7조·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지원회의 및 통합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발생요인

- 1) 통합지원 사업: 일상생활(가사지원, 방문목욕 등)을 위해 필요한 돌봄 주거환경개선 등
- 2) 통합지원회의 관련 참석자 수당
- 3)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나. 관련조문: 안 제5조·제7조·제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계	533,000	559,000	576,700	595,462	615,350	2,879,512
군비	373,100	391,300	403,690	416,824	430,745	2,015,659
도비보조	159,900	167,700	173,010	178,638	184,605	863,853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소요액		533,000	559,000	576,700	595,462	615,350
허브센터 집기구입		8,000	-	-	-	-
돌봄인력 인건비		280,000	295,000	312,700	331,462	351,350
운영비(사무관리비)		58,000	60,000	60,000	60,000	60,0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주거분야	46,000	42,000	42,000	42,000	42,000
	보건의료분야	61,000	40,000	40,000	40,000	40,000
	돌봄분야	80,000	122,000	122,000	122,000	122,000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6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인구의 고령화와 구조 변화를 고려해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효행을 적극 장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가짐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함(안 제1조~제4조)

- 1) 4세대 이상 가정 ⇒ 3세대 이상 가정
- 2) 70세 이상 직계존속 ⇒ 80세 이상 직계존속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신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의 세부기준·절차·서식 등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함(현행 제4조~제6조)

라.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함(현행 제7조·제8조)

- 1) 지급중지 및 반환 등, 시행규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2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6조

다. 예산조치: 2026년 예산 43백만원 확보예정

라.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 법리 검토

마.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9. 5.~9.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입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효도수당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 범위에서 효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효도수당 지원의 대상은 효도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거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효도수당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 그 지원 대상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세대 이상 가정의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효도수당 지원 기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 시행 이후 효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지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 가정의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등록된 가정은 이 조례에 따른 효도수당 지급 대상 가정으로 본다.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나. 관련조문: 효도수당 지원(안 제3조), 지원 대상(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군비	43	45	47	49	51	23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효도수당: 43,000천원 = 72세대(통계청 2024. 인구총조사 자료 참고) × 50천원 × 12개월

가. 대상: 관내 8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나. 기간: 신청일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다. 금액: 1가구당 월 50천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6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개선하여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법령에 정한 기한으로 정비함(안 제10조)

- 1) 현행: 해당 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 이내
- 2)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나. 인용 법령·조례의 개정사항 정비함(안 제3조·제7조·제16조·제17조)

다. 법령 재기재 조항 삭제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29조
-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24. 11.) 반영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9. 5.~9.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을 “발주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과장”을 “본청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해당 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공사”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요”를 “군수는 주요”로 하고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17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7조(공사감독) ① 군수는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무원을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시방서와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실공사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실공사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 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7조(공사감독) ① 군수는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무원을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시방서와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본청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실공사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실공사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사실명제) ① 군수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공사금액이 2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을 기재한 공사준공 표지석을 설치 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17조(수당 등) 명예감독관의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공사실명제) ① 군수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공사금액이 2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내용을 기재한 공사준공 표지석을 설치 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17조(수당 등) 명예감독관의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6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묘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 물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명칭을 현행화함(안 제12조)

나. 묘역 등 방문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물품 제공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21,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9. 11.~9.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위패 봉안소”를 “위패봉안각”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기념품 등 지원) 군수는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묘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등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위패 봉안소) 묘지에 안장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묘역에 <u>위패 봉안소</u>를 둔다. <u><신 설></u>	제12조(위패봉안각) 묘지에 안장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묘역에 <u>위패봉안각</u>을 둔다. 제17조(기념품 등 지원) 군수는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묘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등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묘역 등 방문자에게 기념품 등 제공

나. 관련 조문: 기념품 등 지원(안 제1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2025년 예산 21,000천원 확보

1) 묘역 등을 방문하는 단체방문객 10,500명

2) 기념품 개당 2,000원

작성자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